

석사과정 훈련수행과제

복지국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

지도교수 박 성 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회계학과

김 다 영

2024년 8월

## 국문초록

국가는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한다. 20세기 후반 이른바 3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PC와 인터넷이 보급되며 기존 수기로 처리해오던 행정 처리방식이 디지털로 전산화되면서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보의 데이터화는 기존의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업무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그 후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 분석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생겼으며 국민들은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보다 발전된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게 되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중 조세정보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받은 가장 핵심적인 정보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세정보는 엄격한 세금 부과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되어왔으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세정보를 지금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세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조세정보가 데이터로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동의에 의한 조세정보의 활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선안을 제시하고 조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국세청의 적극적

인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데이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행정데이터 통합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생태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시사점이 있다.

키워드 : 조세정보, 국세데이터, 공공데이터, 데이터복지국가

# 목 차

I. 서론 .....	6
II.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 .....	10
2.1 비밀유지 .....	10
2.2 납세자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	12
III. 선행연구 분석 .....	14
3.1 조세정보에 대한 선행 연구 .....	14
3.2 공공데이터에 대한 선행 연구 .....	16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	18
IV. 주요국의 조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	20
4.1 미국 .....	20
4.2 독일 .....	22
4.3 일본 .....	23
V. 조세정보의 실효성있는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24
5.1 납세자 동의에 따른 조세정보 제공 법적근거 마련 .....	24
5.1.1 현황 .....	24
5.1.2 문제점 .....	26
5.1.3 개선안 .....	28

5.2 조세정보 활용에 대한 국세청 관리·감독권 강화 .....	32
5.2.1 현황 .....	32
5.2.2 문제점 .....	37
5.2.3 개선안 .....	39
<b>VI. 결론</b> .....	45
<b>참고문헌</b> .....	49

## I.서론

원유가 정제소를 거치며 가치 있는 석유가 되어 시장에 유통되듯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쌓인 데이터가 분석·가공의 과정을 거치며 가치 있는 정보가 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sup> PC와 인터넷이 보급되며 기존 수기로 처리해오던 개인정보와 행정처리를 전산화하게 되면서 공공행정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고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란 인식은 정책을 수립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기반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를 가져왔고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어야한다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기존 정부는 기관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엄격하고 폐쇄적으로 국민의 정보를 관리하여왔는데 최근 정부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 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별 맞춤형 자동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2019년 UN총회에 제출된 복지국가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기반 복지국가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1)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는 원유가 아니라 데이터이다. (2017.5.6.이코노미스트)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복지행정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통합,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전산화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왔고 이제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과의 정보 공유를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디지털 뉴딜<sup>2)</sup>을 추진하였다.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 혁신, 수요자 관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민·관협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개별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선제적이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기관 및 기업별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정보 주체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020년 데이터 3법<sup>3)</sup> 및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으로써 마이데이터 허용,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가명정보 구분, 정보제공 요구권 등을 도입하여 데이터 복지국가로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세청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sup>4)</sup>으로 지정되었고,

---

3) 2020년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4) 2020년 금융위원회 지정 ‘데이터전문기관’ 및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2023년 발간된 ‘국세데이터 활용안내서’에는 법적 용어인 과세정보란 표현 대신 국세데이터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조세정보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에서 매우 유용한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복지국가에서 정부는 첨단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정부는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러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개발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데이터 복지국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 데이터의 정보 주체, 이들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저장하는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분석이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와 실제로 빅데이터 기술과 분석 방법을 구현해내는 시장과 개발자들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큰 범위의 데이터 생태계로 볼 필요가 있다.<sup>5)</sup> 이러한 시장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정보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은 정보 주체인 국민을 대신하여 정보 주체의 의사대로 시장에서 데이터가 당초의 목적대로 안전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의무가 추가된다. 지금까지 조세정보는 핵심 개인정보로 보아 세금부과의 목적과 법률로 제한된 경우에만 매우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 주체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더 나

---

5) 김수영, 김수완(2022.6). 데이터 복지국가의 도래와 쟁점

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조세정보는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데이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행정 데이터 통합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 생태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조세정보의 정보 주체인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조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조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주체인 국세청에서보다 적극적으로 조세정보의 유통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정보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조세정보와 공공데이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조세정보 제공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볼 것이며 제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보 제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납세자 동의에 따른 조세정보 제공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과 국세청 관리·감독권이 미비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지적하고 구체적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종 제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 II.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

### 2.1. 비밀 유지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되면서 국세기본법에 조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81조의8(비밀 유지), 제81조의9(정보의 제공)으로 구분되어 신설<sup>6)</sup>되었고 지금까지 확대되어왔다. 그 중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조세정보의 제공을 국세청에 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은 비밀유지 조항이다. 1996년 제정 당시 제81조의8(비밀 유지)였던 조항은 현재 제81조의13(비밀 유지)로 유지되고있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은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할 수 없으며, 세금부과 목적 외의 사용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과세정보로 명칭하며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정의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자료 외에도 국세청이 업무 상 수집한 자료를 포괄하여 비밀 유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 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sup>7)</sup>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비공개 의무를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

6) 국세기본법(법률제5189호, 1996.12.30.)

7)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법에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과세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행정정보와 비교하면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과세정보는 그 사용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있다.<sup>8)</sup>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 외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1996년 제정 당시 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로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이 조세 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 목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 상호 간의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로 총 5개의 경우였으나 많은 연구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는 총 9개로 늘어났다. 현재 총 9개의 예외의 경우는 제정 시 5개 외 ⑥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⑦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⑧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

8) 이동식(2012. 6).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등 총 9개의 경우가 예외적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 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보 주체인 납세자의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세무공무원이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의 범위 내 최소한의 과세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엄격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유지 조항에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제공 받아 과세정보를 수집하게 된 제3자에게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다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여 형법 및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 보아 엄격하게 제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2.2.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항은 납세자 본인이 국세청에 본인의 조세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인의 정보에 대한 납세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1996년 제정 당시에는 납세자 본인이 조세정보를 요청한 경우만 명시

되어있었으나 2015년 국세기본법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 등 세무대리 업무가 대중화되며 세무대리 업무 수행자를 위해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다.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규정되어있으며, 위임 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sup>9)</sup>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과세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는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정의된 바가 없다. 납세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니만큼 제81조의13(비밀유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에 준하는 납세자 본인이 제출한 신고 자료 뿐만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업무 상 취득한 자료까지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 및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2015년 후 지금까지 행정규칙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지 않고 있다.

---

9)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서 민감정보란 정보주체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 Ⅲ. 선행연구 분석

#### 3.1. 조세정보에 대한 선행연구

조세정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 조세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법률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조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복지, 디지털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현진권(2005)은 개별과세정보는 개인정보 비밀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공개할 수 없으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정보를 누설할 경우 국회의원들은 높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동식(2012)은 조세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하는데 그 정보는 납세자의 사생활,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해당 조세정보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됨을 지적하였다.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세무공무원의 범위를 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게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인 과세정보의 범위를 국세청이 수집한 모든 정보가 아닌 세

금 신고정보로 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외적인 공개사유와 범위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신뢰보호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과 공익적 사유, 사회보장행정, 올바른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개 사유·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한 유종성(2021)은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하여 행정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세금에 관련된 각종 행정정보를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정보와 통합하여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납세의 의무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닌 공적인 정보로 간주하여 정책 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발전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한때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으며 조세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 행정 방향을 연구한 김영순(2021)은 국세청에서는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의 절감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주장

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 영리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간의 정보교환의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납세신고에 대한 지원은 ICT기술<sup>10)</sup>등의 발전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몇 시간이고 대기하여야 했던 방법에서 PC,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가 일상화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이 일상으로 들어온 만큼 세무 행정에도 이런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세무 행정의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3.2. 공공데이터에 대한 선행연구

본 논문에서는 조세정보를 공공데이터로서 다루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련 선행논문도 살펴보고자 한다. 김수영(2022)은 국가 행정개혁의 지향점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온라인화하는 것을 넘어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복지의 신청, 집행, 선별, 전달 등 관리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복지국가임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를 두 가지로 모색하였다. 첫째,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 이용에 제한이 크던 것이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며 개인정보를 활용하자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둘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민

---

10) IT(Information Technology)에 통신(Communication)이 더해진 개념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원격제어 등을 일컫는 기술

관협력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재정을 통해 민간의 협력을 구하던 복지 국가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에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며 영리기업이 수익 및 데이터를 참여 유인 삼아 기존 정부가 제공하던 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와 활용에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주요 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변화에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게 요청됨을 강조하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세영 (2023)은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 관점과 활용 관점이 양립하여 구분되었으나 마이데이터 개념이 등장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시각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높여 개인에게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관이나 기업은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염려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위하여 서비스 측면에서 앞으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과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융합형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하고 개별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상호 간에도 운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에서 허용한

개인데이터 처리 권한을 폭넓게 기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 정부의 통제보다도 개인의 통제 아래 개인데이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거버넌스적 측면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이더라도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과 기업이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개인데이터의 활용과정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복지국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정보 제공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조세정보 제공관련 선행연구와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조세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률 개선안은 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조세정보는 국가가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할 정보로 취급하며 엄격하게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복지국가가 도래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고 조세정보 역시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자인 납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항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여 민간과의 협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 행정에 실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V. 주요국의 조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세정보 제공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공개주의를 취하고 법률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국의 과세정보 제공 대상자 및 제공 정보, 제공 방법,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1. 미국

미국은 1862년 소득세의 도입으로 과세정보의 제공이 시작되었다. 이때는 납세자들의 상호감시를 독려하기 위하여 세금 신고서를 공공기록물로 규정하였으며, 행정명령이나 규칙에 의해 납세자들의 정보가 법원에 게시되기도 했으며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sup>11)</sup> 이후 여러 논쟁 및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sup>12)</sup>을 겪으며 납세신고자료는 공공기록물이 아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대 전환되었다. 그리고 예외적인 공개의 허용 범위 역시 행정 정부가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정해지도록 하였다.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103조에서는 과세정보를 세금신고서 및 신고정보(returns and return information, 이하 납세신고자료)로 정의하고 있다.<sup>13)</sup> 이 조항에서 말하는 신고서란

11) 위찬필(2019.11). 과세정보 활용과 비밀유지 의무와의조화방안

12) 1976년 대통령 선거활동 감시위원회(워터게이트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백악관에서 닉슨대통령의 라이벌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닉슨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신고서 및 각종 부속서류를 의미하며 신고정보란 납세자의 신원·소득의 성격·소득공제·세액공제·조세 채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국세청이 수집한 기타 신고나 조세채무에 관한 자료 및 공개 금지된 서면 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신고자료를 납세자가 지명하는 자 또는 정보 주체인 납세자가 납세신고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sup>14)</sup>, 당해 세금신고자료에 대해 실체적 이해관계(mater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는 개인 등에게 공개하는 경우<sup>15)</sup>, 조세행정 이외의 다른 행정목적을 위해 납세신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예,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이 납세신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sup>16)</sup>, 납세신고자료의 제공·저장·전달·재생산 등에 종사하는 자나 그와 관련된 수리·점검 등을 담당하는 자 등에게 납세신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sup>17)</sup>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납세신고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된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sup>18)</sup>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원고에게 무단 공개나 조사의 개별 건수에 대해 1천 달러, 또는 무단 공개나 조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배상액과 고의적이거나 중과실로 인한 공개나 조사의 경우에 징벌적 손

---

13) 문성환(2007.8). 과세정보 공개제도 개선방안

14) IRC Sec. 6103 (c)

15) IRC Sec. 6103 (e)

16) IRC Sec. 6103 (l).

17) IRC Sec. 6103 (n)

18) IRC Sec. 7431

해배상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 소송비용, 일반적으로 합당한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 4.2. 독일

독일의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 AO)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데이터 처리 및 비밀 유지, 정보 주체의 권리, 데이터 보호 감독으로 크게 나누고 매우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세무 당국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sup>19)</sup>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 조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업무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연방법 및 유럽연합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공개가 허용되어진 경우<sup>20)</sup>, 정보 주체인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sup>21)</sup>, 불가피한 공익적 요청(예, 공공, 국가의 안전 보호 등, 경제범죄 기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잘못된 사실을 교정하기 위한 경우)이 존재하는 경우<sup>22)</sup> 등이 인정된다. 정보 주체의 권리로 세무 당국은 개인데이터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연방 정부나 주에 해를 끼치는 범위가 아니라면 정부 주체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sup>23)</sup>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 당국은 정보 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독일은

---

19) AO 제29조b

20) AO 제30조(4)2

21) AO 제30조(4)3

22) AO 제30조(4)5

23) AO 제32조a

조세 정보 주체의 권한을 적극 인정하고 있다. 개인 조세 데이터를 제공할 때 세무 당국은 최선의 재량에 따라 정보 형식 또는 정보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sup>24)</sup> 또한 세무 당국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금융 당국 감독<sup>25)</sup>을 포함하여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 4.3.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 상응하는 국세통칙법을 두고 있으나 비밀유지 조항이나 예외를 명시한 세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행정정보가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법률에는 과세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국세통칙법, 회계검사원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세통칙법에서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6)</sup>

---

24) AO 제32조d

25) AO 제32조h (1)

26) 최장수(2019).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규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

## V. 조세정보의 실효성있는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5.1. 납세자 동의에 따른 조세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 5.1.1. 현황

데이터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부 기관 간 원활한 행정데이터 유통뿐만아니라 민·관 데이터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데이터 생태계는 빅데이터로 시작하여 오픈데이터를 거쳐 마이데이터로 완성된다.<sup>27)</sup> 데이터 혁명은 정보기술이 발전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고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가능해진 빅데이터에서 시작되었다. 국가를 포함한 정보 생성 기관에서만 기관별로 폐쇄적으로 보유하던 정보 독재의 시대에서 저작권 및 특허권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서 배포하는 오픈데이터로 발전하며 정보 개방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오픈데이터의 발전을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으며 데이터 민주주의가 확산되며 데이터 생태계는 더욱 진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민주주의 수준을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하면 늦게 시작하였다는 평이 있었으나 결국

---

27) 박주석(2018).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sup>28)</sup>를 차지하며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픈데이터의 개방만으로는 가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뒷받침되어야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 가장 직접적인 권리는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으로 볼 수 있다<sup>29)</sup>.

우리나라는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 후 2021년 공공마이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추진하여 데이터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기관별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를 중심으로 모으고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데이터 공유·활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동권(전송 요구권)의 성격인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이 전자정부법에 도입<sup>30)</sup>되었다. 행정안전부의 고시<sup>31)</sup>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

29) 이수경(2022). 윤리적 이슈: GDPR과 데이터 자기결정권 정책 및 법률 동향

30) 전자정부법 제43조2 (법률 제18207호)

31) 2021년 도입 당시 제공 서비스는 총 8종이었으나 2024년 현재 109종까지 확대 제공 중이다.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총 10개 종류의 민원 서류를 행정·공공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은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이 도입 되기 전에는 위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했으나 도입 후에는 민원인이 제출기관의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별도 제출 없이 본인의 동의 의사를 표현하면 제출기관이 국세청을 통해 직접 해당 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가명처리하여 개인 단위로 결합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세청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열거하는 종합소득 및 원천징수 소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 내역을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 5.1.2. 문제점

그러나 여전히 기관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 공유와 활용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분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sup>32)</sup> 현재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은 납세자 본인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이동권의 의미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제3자가 조세

---

32) 2023년 한국의 행정데이터 연계 활용의 현황과 개선점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 비밀유지의 조항으로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비밀유지 조항의 경우 법률로 정한 예외적 사유 9개에 해당하여야만 조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행정기관이 법으로 정한 국세청 과세정보 외 다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원인에게 다시 직접 제출받거나 법을 개정하여야만한다. 이러한 걸림돌로 인하여 민간에서는 납세자의 세무 업무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여 조세정보를 우회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예외적 제공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어 판단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 내역 정보 요청에 대해 공개하기도 하고 비공개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개인정보를 위해 과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분석하는 것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세정보 제공의 예외사유에 납세자의 동의가 명문화되어 납세자인 정보 주체에 의지에 따라 조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다른 법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을 결정하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를 제공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이 개정되어 정보 주체의 동의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정보 주체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본인의 정보를 특정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다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전송할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고 있다.<sup>33)</sup> 2024년 관세청에서도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sup>34)</sup>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무역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조세정보의 엄격한 제한은 지나쳐 보이지 않을 수 없다.

### 5.1.3. 개선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은 비밀유지 조항과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을 정교하게 발전시키면 데이터 생태계에서 조세정보를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안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항에 납세자 본인, 세무 대리 업무 외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무 업무의 전반적 관리를 위하여 납

---

33)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2023년 3월 신설되어 2025년 시행 예정)

34) 관세법 제116조의6 신설

세자 본인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준하는 모든 조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세무 대리 위임의 경우와 특정 목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세정보를 다룰 수 있는 동의를 받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는 경우는 방지하고 납세자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표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p> <p>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p> <p>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 및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표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li> <li>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li> </ol>	<p>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li> <li>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li> <li>3. 납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li> </ol>

위의 개정을 통해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현재보다 포괄적인 수요중심 조세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생태계를 위하여 민·관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정보 주체의 의사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정보가 안전하게 제공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5.2. 조세정보 활용에 대한 국세청 관리·감독권 강화

### 5.2.1. 현황

2021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년 해오던 현장 신고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독려하였으나 복잡한 홈택스 세금 신고 방법으로 납세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sup>35)</sup> 이러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로 시장에서는 다양한 세무회계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기존의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장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상자인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특수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며 이들을 타겟팅한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득지급처에서 원천징수 세율 국세 3%와 지방세 0.3%를 합한 3.3%를 신고 납부하고 실제 소득자인 개인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롯한 1년의 소득을 직접 정산해야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적용<sup>36)</sup>하고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확률이 높은 편이다. 기존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임을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사업자 및 이종근로소득자 등 일정 금액 이상 소득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위와

35)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어려운 납세자들 ‘부글부글’ (대한경제 2021.05.10.)

36)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같은 경우의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들은 개별 안내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물론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 해 신고대상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세금에 취약한 계층의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 과정을 거쳐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틈에 다양한 세무회계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서비스를 홍보하였다. 납세자는 세무회계 플랫폼 서비스에 주민번호 및 홈택스 아이디를 입력·제공하고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인적용역·사업소득 등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세금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까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였다. 납세자는 환급세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부담하겠다는 동의만 추가로 하게 되면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해주고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납세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는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특히 대표적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경우 출시 후 만 3년 만에 1,546만명이 넘는 고객이 가입하고 6천억이 넘는 환급 신고를 대행해주고<sup>37)</sup>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러한 세무회계 스타트업을 명칭하는 세금(Tax)과 기술(Technology)를 합친 택스테크(TaxTech)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택스테크 기업은 기존의 정부가 놓친 세금 취약층 계층을 위해 복잡한 세금 문제를 고도화된 AI기술을 활용하여 편의성을 높여 복지서비스로 제공하였으나, 해당 서비스

---

37) 삼쩜삼이 3년간 걸어온 발자취(<https://blog.3o3.co.kr/230525-insight/>)

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이어졌다.<sup>38)</sup>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본인과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택스테크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납세자 주민번호 및 홈택스 아이디로 세무 업무를 위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를 제외한 납세자 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의 납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되면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대표적 스타트업인 자비스엔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다. 결국 2023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비스엔빌런즈에 8억 5,41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sup>39)</sup>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관련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입 동의 등이 이뤄졌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러한 택스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세무사법 위반 혐의<sup>40)</sup>가 계속되는 와중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일부에게 제공하던 모두채움신고서<sup>41)</sup> 대상자를 종합소득세

---

38) '삼짚삼' 돌풍, 결국 신기루였나 (taxwatch, 이희정기자 2024.3.7.)

39)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삼짚삼' 앱 운영 사업자, 총 8억여원 과징금 부과(보안뉴스 2023.6.28.)

40)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자비스엔빌런즈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강남경찰서는 이듬해 8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세무사회가 즉각 이의신청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으나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면, 세무사회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이다.

41)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

환급세액이 예상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까지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국세청의 서비스 제공에 중앙정부가 이례적으로 스타트업 견제에 나섰다(42)는 비판의 목소리(42)가 나왔으며 모두채움신고서 완성도에 대한 의심(43)도 불거지며 세금 신고 서비스를 두고 마치 영리기업과 국세청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2022년 11월 자비스엔빌런즈는 세무분야 세계 최초로 영국 정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44)에 선정되고 영국 현지 법인까지 설립하였고 2023년 한국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까지 청구하였으나 끝내 영국 법인은 폐쇄(45)하고 코스닥 상장은 무산(46)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존 세무업계와 국세청에서 소외받은 세금 추항계층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는 납세자를 위해 개발 발전될 필요가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 상황 속에 혁신과 불법 사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다.(47)

미국에서는 2011년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48) 제도를 통해 개인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42) 세무 서비스업 '삼쩜삼' 견제 들어간 국세청(디지털타임즈 2023.9.3.)

43) 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낭패 본다 (비즈와치 2023.5.11.)

44) 영국 국제통상부가 해외 혁신 스타트업의 영국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별 비자패스, 전문가 멘토링, 투자자와의 교류, 법률 자문 등 현지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45) 상장 앞둔 삼쩜삼, 글로벌 사업 '전면 철수'...英법인 돌연 폐쇄(부산일보 2023.12.22.)

46) 삼쩜삼 상장예비심사 제동...또 꺾인 혁신플랫폼(서울경제 2024.2.14.)

47) 속도 붙는 국세청 '홈택스' 해외 수출, 이면엔 방치당한 '택스테크 스타트업'이 있다 (파비리서치 2023.4.26.)

48) 2011년 오바마 정부의 예산관리국 등에서 주도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하여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에게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민간에게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대폭 허용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민간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해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나, 미국은 근로소득자라도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세금 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테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 민간업체는 인튜이트(Intuit)가 있다. 인튜이트는 1984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여 온라인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는 대규모 핀테크업체<sup>49)</sup>로 1993년 나스닥(NASDAQ)에 상장했으며 2019년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 서비스로는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tax),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용 회계 및 재무 관리 킥북(quickbooks), 웹 기반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민트(mint)가 있다. 미국 연방 국세청은 매년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할 파트너업체를 선정하고, 저소득 납세자의 경우 무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튜이트는 미국 연방 국세청과 협약을 맺은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로 터보택스를 통해 저소득 납세자에게는 무료 소득신고 및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신고항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며, 유료 서비스의 단계를 구분하여 투자와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세금 관리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터보택스를 사용해본

---

49) 마이데이터 국내외 현황 및 주요 해외사례, KDB 미래전략연구소

사용자 상당수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용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인튜잇트는 세계 500대 기업이 될 수 있었다.

## 5.2.2. 문제점

우리나라 택스테크 기업이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무 업무에 위임을 받아 홈택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납세 자료로서 택스테크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세정보의 범위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수준으로 매우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택스테크 기업들은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하고 세금 신고가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후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조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면서 제공 방법과 절차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영리기업인 택스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가입자 1600만명을 돌파한 자비스앤빌런즈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이나 시정조치·감시체계가 없다

는 지적이었다. 또한 전국민 세금환급신청 가능, 1인 평균 환급액 175,200원 등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sup>50)</sup> 택스테크 기업들은 조세정보를 우회적으로 접근·활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 조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택스테크 기업의 우회적 접근에 대해 제재를 할 수도 없고 관리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인 셈이다. 이러한 민간의 고도화된 AI 서비스는 단순 정기 신고를 넘어 특정 항목의 민원 접수(경정청구)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서비스가 개발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나 우회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현 상황에서 민간 택스테크 기업이 수집한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법에 따라 정교하게 민원 서류를 작성하였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AI 서비스로 신속하게 작성되어 대량의 일괄 접수가 가능한 민원 서류의 세금 내용에 대한 설계가 애초에 잘 못 된 경우라면 국세청이 대응하는데 있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와 세무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정보 주체와 기업 간의 안전하게 조세정보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제공 방법과 범위, 절차에 대한 규칙을 하루 빨리 정하고 국세청의 조세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50) 나도 눌러 본 ‘삼짇삼, 환급액 찾기’…국감서 질타받은 이유는?(서울경제 2023.10.12.)  
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 몰리는데 국세청 ‘나몰라라’(조세플러스 22.9.22.)

### 5.2.3. 개선안

2019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조항에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제공 받은 대상자는 과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무가 부과되고, 과태료 규정이 추가<sup>51)</sup>되었다. 국세청장은 법률적 비밀 유지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 되어 제3자가 제공 받은 과세 정보를 이유 없이 다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위하여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외 이용 금지, 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보관기간이 경과되었을 시 과세정보를 파기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 사항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자는 점검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

51) 국세기본법(법률 제18586호) 개정

14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는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조항의 예외적 경우로 과세정보가 제공된 경우로 제한되며 그 대상은 주로 법원, 통계청, 공공기관이다. 민간의 택스테크 기업이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가공·활용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비밀 유지의 예외로 제공된 경우라면 확인해야하는 과세정보의 안전성 보호 조치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 주어지지 않아 조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에 의하여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제공받아 취해야하는 안전성 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긍정적 의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장에서 개발된 서비스일지라도 영리기업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사전에 조세정보를 보유하고 제공하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택스테크 기업의 조세정보 사용을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적극 점검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비밀유지 조항에만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규정에도 추가할 필

요가 있으며, 과태료 규정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조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p> <p>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p> <p>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 및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p>

	<p>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⑤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위 개정을 통해 국세청은 조세정보를 수집·보유·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정보 주체인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복지국가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에 정부가 한계가 있듯 데이터 감독의 역할 역시 정부가 모든 것을 감독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은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듯이 데이터 감독 역시 정보 주체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에게 본인의 조세정보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세정보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의 조세정보가 오남용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AI와

데이터 분야의 경쟁력은 민간의 데이터 활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제한없이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하루빨리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조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 VI. 결론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일찍이 전자정부·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며 행정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하였다. 그 결과 2015년 OECD 첫 평가 이후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8년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고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 국제적 요인으로 요소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국 요소수 재고 현황 개방 등 주요 데이터를 적시 개방·활용하여 국가 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한 점을 크게 평가받았다. 지난 수년간 공공 부문은 빠르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대한 행정데이터를 축적하여 이러한 성공을 이뤘으나 여전히 공공기관 간 행정데이터 결합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적용되어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부진하다는 평가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이어 텍스트 크기업 등 민간과의 데이터 유통을 통한 각종 빅데이터 생산과 가공에 대한 정책 또한 매우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개방 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관점을 고려하여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사전에 조사하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된 다양한 고품질의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민생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의 경제사회가 개방화·고도화·선진화되면서 세금 신고는 더욱 복잡해지고 세법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노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득처에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N 소득자도 대폭 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다양화로 연말정산 외에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납세자가 늘어났고 이들을 겨냥한 택스테크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영리기업의 참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다양한 영리 기업들은 이러한 세금에 취약한 계층의 납세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 소득자들을 대상으로도 회계, 인사, 재고 관리, 세금계산서, 주주명부 등 앞으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조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있어 다방면으로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던 조세정보를 납세자의 자기 정보 결정권에 따라 납세자 주체적인 의지를 반영하여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세법 규정 및 우리나라의 다른 법들과 현재 국세기본법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법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과 제81조의14 납세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조항에서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도 세무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인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라도 조세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야하나 현행 국세기본법 규정은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민간의 조세정보 유통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 기관 안에서도 조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데이터 칸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외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대상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역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조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있어 선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세정보의 국세청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적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게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구축해야한다는 의무를 부담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 등장한 텍스트크 영리기업에서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집하고 가공·활용하고 있음에도 해당 비밀유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세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데이터 유통이 행정기관 및 민간까지 활성화 되고 있어 조세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의무 대상을 민간을 비롯한 조세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기관과 기업에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훈령을 하루빨리 정하여 조세정보를 활용하고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이다. 조세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그만큼 안전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매우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나름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조세정보 활용을 위한 개선안이 제시되어 디지털 정부혁신을 이루고 디지털 복지국가로 도약하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201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 국세청(2023). 국세데이터 활용안내서
- 금융위원회(2018).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종합방안
- 제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3).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 보건복지부(202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 2021 제390호 국회 제3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등>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2). 데이터산업백서
- 행정안전부(202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행정안전부(2024).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현진권(2005.8). 개별과세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하나? : 현안과 정책방향 조세학술논집 학술저널 103p - 123p
- 이동식(2012. 6).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9집 279p - 316p.
- 유종성(2019.9). 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월간 복지동향 제251호 28p - 36p
- 김영순(2021.12.). 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

- 무행정 방향 법학연구 학술저널 31p - 68p
- 김수영, 김수완(2022.6). 데이터 복지국가의 도래와 쟁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91p - 118p
- 이세영 외2 (2023.4.). 마이데이터 기본 특성이 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77p - 86p
- 위찬필(2019.11). 과세정보 활용과 비밀유지 의무와의 조화방안
- 박주석(2018).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41p - 46p
- 문성환(2007.8).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경제현안분석 제19호
- 최장수(2019).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규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 법제연구 제57호
- 심연숙(2021). 마이데이터 활용의 국내외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이수경(2022). 데이터 자기결정권 정책 및 법률 동향 TTA저널 204호
- 최현수 외2 (201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 노대명(2022.11).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그 미래 보건복지포럼
- Yeung, K. (2018). Algorithmic government: Towards a new public

analytics. In Proceedings of the ThinkBig Workshop, Windsor, UK (pp. 25-26)

Dencik, L. (2021). The Datafied Welfare State: A Perspective from the UK. In A. Hepp, J. Jarke & L. Kramp. (eds.) *The Ambivalences of Data Power: New perspectives in critical data studies*. Palgrave Macmillan.

Fuchs, C., K. Boersma, A. Albrechtslund, & M. Sandoval, (eds). (2013). *Internet and Surveillance: The Challenges of Web 2.0 and Social Media*. London: Routledge.